

이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출연월일 : 1997. 10. 제출자 : 이천시장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안이유

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읍·면·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

주요골자

별표 1에 "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"란을 신설함(안 제3조)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의 <증명>중 9. 기타 제증명에 “3)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)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	1 건	600	
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

행

개

정

안

[별표 1]

구 분	기준 금액(원)	비고
<증명>		
1. 인감에 관한 증명 ~	(생 략)	
8. 주택에 관한 증명		
9. 기타 제증명		
1) 수산업에 관한 증 명 종전토지분할	1통 500	
2) 기타 시설공부 등 에 의해 발급하 는 증명	1통 900	
<신설>		
<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>	(생 략)	

[별표 1]

구 분	기준 금액(원)	비고
<증명>		
1. 인감에 관한 증명 ~	(현 행과 같 음)	
8. 주택에 관한 증명		
9. 기타 제증명		
1) -----	-----	
2) -----	-----	
3)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	1건 600	
<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>	(현 행과 같 음)	